

---

# 급경사지 재해예방단 구성 · 운영 계획

---

2025. 4.



특수  
법인

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

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

## I 개요 및 필요성

- 근거법령 :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
  - 급경사지법 제32조의2(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)제5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(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)제3호
-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,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 등으로 발생되는 급경사지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·원인조사로 현장 대응력 및 전문성 강화 필요

## II 구성 및 운영기간

- 단 장 : 단장(재해예방단 전문가 중 1명)
- 운영주체 및 주관 :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
  - 행정안전부「재해경감대책협의회」 및 관계기관의 인력지원 요청 시 전문가 인력풀 지원
  -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장이 위촉·운영
- 운영기간 : '25.05.15.~'25.10.15.(급경사지 재해 발생 시 수시로 운영)

## III 재해예방단 선정

- 자격요건\* : 국내 관련 학회 등에서 지반, 지질, 방재, 산림 등 급경사지 분야 전문가 추천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 중 회장 또는 임직원 추천을 통해 인력풀 구축

\*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회원으로서 재해예방단의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 한함

### <재해예방단 자격요건>

- ※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회원(연회비 완납 必)으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고, 협회 요청시 긴급현장 조사가 가능한 자로서 급경사지 피해 원인분석, 응급조치 및 항구적인 대책공법 제시가 가능한 전문가
  - a. 급경사지 관련 분야 전공이수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
  - b. 급경사지 관련 분야 고급이상 경력자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자
  - c. 급경사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자
  - d. 그 밖에 협회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## IV

### 임무 및 의무사항

- 급경사지 피해현황 및 발생원인 조사
- 급경사지 재해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 활동 등
- 급경사지 피해지에 대한 응급 및 항구복구 방안 제시
- 정부 및 지자체 급경사지 정비사업, 국가안전대진단, 계측 등 관련 업무 지원

#### □ 의무사항

- 재해예방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 요청을 받을 경우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해야 함
- 재해예방단은 현장조사 및 분석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됨

## V 급경사지 재해 발생 시 응소절차

1	행정안전부	<p>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상황전파</p> <p>* 대상자 :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</p> <p>* 내 용 : 급경사지 피해발생 관련 상황</p>
---	-------	--



2	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	<p>급경사지 피해 발생 시 상황접수(행정안전부 → 협회)</p> <p>* 내 용 : 피해발생 일시, 장소 및 피해경위 등</p>
---	----------------	--



3	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	<p>급경사지 피해 발생 시 응소유무 확인 요청</p> <p>* 피해발생 권역 재해예방단 대상 문자전송 또는 유선 통화</p>
---	----------------	--



4	재해예방단 (전문가)	<p>급경사지 피해 현장 응소 가능자 보고(문자전송 / 유선통화)</p> <p>*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: 070-7703-7523</p>
---	----------------	--



5	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	<p>급경사지 재해예방단 파견계획 수립 및 통보</p> <p>* 조사현장, 일시, 재해예방단 편성, 관계기관 협조사항 등</p> <p>* 통보대상 : 행정안전부, 재해예방단(전문가), 관계기관 등</p>
---	----------------	---